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91
----------	------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강석주 의원(찬성 10명)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강석주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영유아” 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 (2023.10.26.~10.30.) 결과 :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의 ‘영유아’ 정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됨.

2 주요사항 검토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¹⁾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²⁾에서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을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로 정하고 있어, 실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 각종 보육서비스는 초등학교 취학 전 7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원 조례」 등 5개 조례에 영유아 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일괄개정 대상 조례 목록>

연번	대상 조례
1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조의2제1호
3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5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다목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상의 영유아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정책지원 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영옥, 김혜영,
도문열, 송경택, 신동원,
유만희, 이상욱, 이숙자,
최호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영유아” 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600000082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강석주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법률 제19606호, 2023. 8. 8.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기존 사용하던 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로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나이 개정은 법률과 실제 정책(초등학교 취학 전 7세 까지 아동에게 제공)의 체계 정합성 제고 목적이므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 따라서 본 조례안 또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